



## [일본 헬로키티] 동아연필상대 소송

일본의 유명 캐릭터인 '헬로 키티'의 상표권자인 일본 회사 (주)산리오는 "1975년 개발해 특허 등록한 '헬로 키티' 상표를 피고가 88년부터 무단 사용해 피해를 봤다"며 동아연필(주)과 동아고재(주)를 상대로 상표권 등침해금지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산리오는 소장에서 "원고는 한국에서 영아트 등과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헬로 키티' 캐릭터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피고가 이와 똑같거나 유사한 캐릭터를 '키티'라는 이름으로 사용해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동아연필측은 "산리오가 79년 국내에서 상표권을 등록하기 전인 76년 키티 상표권을 등록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출처 서울경제

## 엘칸토, 금속장식 소송서 페라가모에 승소

이탈리아의 유명 구두, 핸드백 제조업체인 살바토레 페라가모사와 엘칸토가 비슷한 금속장식 상표를 놓고 벌인 법정 공방에서 엘칸토측이 일단 승소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정장오)는 "엘칸토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페라가모 장식과 비슷한 금속장식을 구두에 부착, 피해를 봤다"며 페라가모사가 엘칸토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페라가모와 비슷한 둥근 고리형 모양의 장식을 구두에 붙인 것은 인정되지만 영문 엘칸토(ELCANTO) 상호를 구두 안창 등에 표시하고 자사 지점과 대리점에서만 판매하는 데다 주요 고객층도 크게 달라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주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살바토레 페라가모사는 지난 4월 엘칸토가 자사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스퀘어 혹 디바이스' 금속 장식을 부착한 구두를 판매, 피해를 봤다며 엘칸토를 상대로 2억9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출처 매일경제

## 불법복제 사이트에 링크 저작권 침해

정품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일명 '와레즈(warez)' 사이트를 개인 홈페이지에 연결(링크)만 시켜놓았더라도 저작권법 침해라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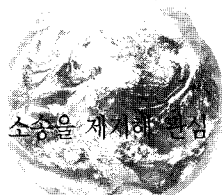
서울지법 형사2단독 김철현 판사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상업용 프로그램인 '나모 웹에디터 4.0'을 무단 복제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링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26♂대학생)씨에게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죄를 적용,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가 프로그램 복제를 할 수 있도록 연결해 놓은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우리나라는 선례가 없지만 미국 등에서는 이미 저작권을 침해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인 홈페이지에 연결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한 판례가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5월 자신의 홈페이지 자료실에 홈페이지 제작 < 관리 프로그램인 나모 웹에디터 4.0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주소를 링크시켜 놓은 뒤 게시판에 압축을 풀 수 있는 암호도 공개했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이 프로그램은 4월 국내 출시 이후 1주일 만에 FTP서버(네티즌간 파일교환 시스템)와 와레즈 사이트를 통해 유포되면서 제작사가 막대한 영업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한국일보



## “ACTV, 디즈니 특허권침해로 제소”

쌍방향 TV 기술업체인 ACTV가 월트 디즈니의 ABC방송과 스포츠 전문채널 ESPN 네트워크가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월트 디즈니를 제소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ACTV는 이 날 법원에 ABC의 ‘월요일 밤 축구’와 ‘백만장자 되기’와 ESPN의 ‘일요일밤 축구’에서 이용하는 ‘고품질 TV’ 쌍방향 방송기술이 자사의 특허권 3개를 침해했다며 디즈니의 기술 사용 금지와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디즈니 자회사인 ABC와 ESPN도 월트 디즈니와 함께 이 날 뉴욕 연방법원에 제소됐다.

디즈니 여성 대변인은 “우리는 쌍방향방송이 가능한 고품질 TV가 특허권을 침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고품질 TV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것으로 완전히 독립된 기술이다”고 반박했다.

시청자는 고품질 TV로 PC를 통해 특별한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예컨대 게임쇼인 ‘백만장자되기’에서 출연자처럼 질문에 대답하거나 통계 자료에 접속하고 축구 경기 중 여론조사에 참가할 수 있다.

ACTV의 지적재산권 담당 임원 스킷 돌은 “우리 특허기술의 라이선스를 ACTV 전체 사업전략의 중요한 일부로 여기고 있다”면서 “디즈니 제소는 우리의 특허권을 보호하고 우리의 라이선스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출처 중앙일보

## 미래와사람, 냉각캔 기술제공자 상대 소송 제기

98년 ‘냉각캔’이라는 신기술을 발표하며 주가조작 의혹을 받았던 미래와사람(대표 전병현)이 냉각캔

기술발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정한 사실을 끌고 있다.

미래와사람은 이번 소송에서 117억원이나 지불했던 고정기술료의 10분의 1에 불과한 10억원만을 배상액으로 청구했다. 액수만 놓고 보면 냉각캔 사업을 포기하기보다는 기술협조를 위한 압박용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미래와사람은 소장에서 “피고인 김모씨가 제공한 기술이문제점이 드러나 상용화하기에 부적절하고 예정됐던 일부 특허권 등록이 무산됐다”면서 “김씨가 제공 기술에 대해 더이상 개량 노력을 이행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래와사람 관계자는 “기업의 자존심 회복 차원에서 냉각캔 개발은 절실하다”면서 “전액이 아닌 일부 금액을 청구한 것은 기술을 전수해준 뒤 기술 개량 요청을 거부하고 있는 김모씨에게 자극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미래와사람은 기술협조를 거부하고 있는 김모씨를 사업에 조속히 동참시키기 위해 소를 제기한 것일 뿐 냉각캔 사업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미 미국이나 일본에서 특허등록이 돼있는 기술이기에 약간의 연구개발만 있으면 방대한 국내 수요를 장악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냉각캔’은 휴대용 음료캔으로 냉각장치가 내장돼 있어 냉장고가 없는 야외 등에서도 시원한 음료를 즐길 수 있도록 고안된 상품.

미래와사람 대주주 권성문씨와 일부 간부들은 98년 2월 냉각캔 양산 발표로 주가를 끌어올리고 허위 과장 공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발된 뒤 권씨는 ‘허위공시는 인정하나 범죄 의도가 없다’며 기소유예, 현 대표 전병현씨 등은 무혐의 처리됐다.

## “다이이찌 특허무효”...특허분쟁서 일동 제약 유리

귀에 사용하는 항생제를 놓고 일본 다이이찌제약과 특허분쟁을 벌이고 있는 일동제약이 최근 특허심판원에서 다이이찌 제품의 특허가 무효라는 심결을 받아냄으로써 특허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다.

일동제약은 “최근 특허심판원은 널리 알려져 있는 제제와 기술구성이 동일하고 흔히 쓰는 관용적 방법을 이용한 제제는 특허를 인정할 수 없다며 다이이찌 제품에 대한 특허등록 무효 심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일동제약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다이이찌의 항생제인 ‘타리비드이과용액(액체를 귀에 떨어뜨리는 제제 성분 오플록사신)’의 특허내용은 해당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가 공지된 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특허가 무효라고 심결했다.

일동제약은 지난해 3월 특허심판원에 다이이찌제약의 타리비드이과용액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했다.

이번 심결에 따라 일동제약은다이이찌가 서울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서 승소해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인 에펙신이용액(일동제약 생산)의 제품생산 판매금지 소송에서 전세를 역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분쟁은 다이이찌가 99년 3월 일동제약의 에펙신이용액에 대해특허침해금지소송을 법원에 제기한 데서 비롯됐다.

곧 이어 일동은 특허침해금지소송에 대응해 특허심판원에 에펙신이용액과 같은 제제인다이이찌의 타리비드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일동제약은 지난 92년 오플록사신 원료합성 허가

를 취득했으며, 93년 에펙신이용액 허가에 이어 95년 10월 오플록사신 주사제를 개발해‘에펙신주사’란 제품명으로 시판하고 있다.

출처 매일경제

## 하버드상표 사용 못해 .. 대법, 상표등록 무효

미국의 명문대학 이름인 “하버드(HARVARD)”가 들어가는 상표를 무단으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유지담 대법관)는 “하버드 선생님”이라는 학습지를 발간하는 류모(58)씨가 “하버드” 상표를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며 하버드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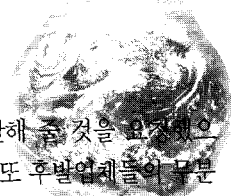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표법은 저명한 다른 사람의 명칭 등을 함부로 쓰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하버드대”의 저명성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류씨가 등록된 “하버드” 상표를 등록할 수 있게 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류씨는 특허심판원이 작년 3월 하버드대측의 청구를 받아들여 “하버드 선생님”이라는 이름으로 발간해 온 학습지의 상표등록을 무효로 결정하자 소송을 냈다.

출처 한국경제

## 빌 게이츠 “내이름 돌려달라”

마이크로소프트(MS)의 빌 게이츠 회장이 자신의 이름을 호텔 상호로 등록한 프랑스인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 소송을 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카리브해에 위치한 프랑스령 섬인 마티니크에서 호텔, 레스토랑 체인을 운영하는 에릭 비그네롱은 1998년 1월 '빌 게이츠'란 상호를 프랑스 특허청에 등록했다.

그는 '빌'은 사전에 나온 것처럼 청구서란 뜻이고 '게이츠'는 현관문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주장했다.

열린 마티니크 법정에서는 양측 변호사가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게이츠의 변호사는 "비네그롱은 게이츠 회장의 유명세를 호텔 영업에 악용하고 있다"며 "빌 게이츠란 상호의 사용은 불법이며 즉각 중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비네그롱의 변호사는 "정보기술(IT)과는 전혀 무관한 업종이므로 혼동의 여지가 없다"고 반박했다.

법원 판결은 올 2월 중순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게이츠는 MS나 마이크로소프트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전세계 기업들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으나 자신의 이름에 대해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출처 중앙일보

## 그락소웰컴, 하나제약 상대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

암 치료 등에 사용되는 항구토제인 '온단세트론'에 대한 특허분쟁이 다시 재연됐다.

한국그락소웰컴은 '하나온단세트론정'이란 이름으로 온단세트론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는 하나제약을 상대로 지난 7월말 서울지방법원에 특허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 소송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한국그락소웰컴은 소송을 내기 전 하나제약에 이

제품의 제조·판매행위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하나제약이 이를 거절했고, 또 후발업체들의 불법적인 특허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회사의 김진호 사장은 "신약 연구개발에 대한 끊임없는 투자를 통해 얻은 자산인 특허권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이번 소송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온단세트론을 둘러싼 특허분쟁은 지난해 10월 그락소웰컴과 동아제약 사이에 한 차례 있었으나, 동아제약이 자사의 온단세트론 제품 생산을 중단하는 대신 그락소웰컴제품인 '조프란'을 공동판매기로 합의하며 마무리됐다.

온단세트론은 지난 90년 영국에서 발매된 이래 현재 세계 80개 국가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조프란은 지난해 국내에서 59억원 판매됐다.

하나제약은 지난 5월께 판매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오페라하우스 도메인 사용말라"

최근 도메인에 대한 권리를 놓고 각종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도메인을 선점 했어도 원래 이름 주인에게 사용권리가 있다는 판결이 속속 내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세계적인 명소로 꼽히는 시드니오페라하우스는 얼마 전까지 인터넷상에서 자신의 이름을 도메인으로 사용하지 못했다.

웹과 카드관련 기술개발 기업인 트릴링스사가 www.sydneyoperahouse.net를 선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오페라하우스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 중재를 신청했고 도메인을 오페라하우스로 사

용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어냈다.

트리링스는 “파리 ‘에펠탑’ 처럼 시드니오페라하우스도 지역의 문화적 특징을 반영하는 일반적인 상징물”이라며 도메인 사용의 정당성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지적재산권기구는 “시드니오페라하우스는 유일한 것”이라는 반론으로 트리링스의 주장을 일축했다. 중국에서는 타회사명을 도메인으로 사용하는 문제가 법적으로까지 비화됐다.

중국에 진출한 미국의 다국적기업 듀퐁이 www.dupont.com.cn을 확보하고 있던 중국의 꺾양 정보통신을 상대로 등록취소소송을 낸 것이다.

이에 대해 중국의 인민법원은 꺾양이 등록을 취소하도록 듀퐁의 손을 들어주었다.

판결문에서 인민법원은 “듀퐁은 세계적 상표로 상표자체가 가치를 갖고 있다”며 “이를 도메인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도메인분쟁이 회사명이나 단체명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개인의 이름과 관련된 도메인분쟁도 발생하고 있다.

최근 팝스타 마돈나는 자신의 이름을 딴 도메인 www.Madonna.com을 되찾았다.

이전의 주인은 미국의 사업가 댄 파리시. 미국판 ‘봉이김선달’로 불리는 그는 www.whitehouse.com을 선점해 놓고 포르노사이트로 사용한 악명 높은 인물이다.

지적재산기구는 타인의 이름을 불순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마돈나에게 자신의 이름을 도메인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다.

록음악의 전설로 불리는 지미 헨드릭스의 유가족도 비슷한 경우이다. 지적재산기구를 통해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던 www.jimihendrix.com에 대한 사용권리를 회복했다.

지적재산기구는 “스타의 이름도 저작권에 포함된다”며 이 같은 판정을 내렸다.

## 디지털 저작권 법적 논쟁 본격화

디지털 저작권을 둘러싼 법적 논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최근 디지털 콘텐츠 육성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의원 입법으로 제정 추진되는가 하면 현행 저작권법에 준용하도록 되어 있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독자성을 넓혀가는 방향으로 개정이 논의되면서 정보사회와 함께 등장한 새로운 저작물을 기존의 저작권법 테두리 내에 둘 것인가, 아니면 완전히 독자적인 영역으로 떼어낼 것인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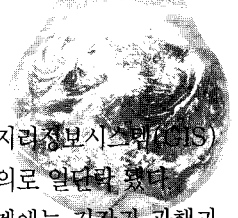
논란의 발단은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은 일반 저작물의 저작권과는 다른 산업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데 있다.

김문환 국민대 교수는 저작권법과 프로그램 보호법의 뿌리는 같지만 산업지재권이 강화되면서 분화되는 추세라며 프로그램보호법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 조항의 경우 저작권법에 준용하게 되어 있지만 컴퓨터 프로그램 산업의 현실과 충돌하는 경우가 많아 보완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 대표적인 사례가 저작권 양도 문제.

현행 저작권법 41조에서는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으며, 특약이 없으면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을 작성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컴퓨터 프로그램의 경우 저작물을 양도한다는 것은 소스코드를 주는 것으로 이를 수정하거나 개선하지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 이에 따라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산하 프로그램심의위원회는 현행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범조항에서 저작권



과의 준용범위를 한정, 명시하는 등 법의 독립성이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연구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기존 저작권법 체제 안으로 흡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지적재산권이 일관된 관리체계없이 부처별로 분산관리돼, 정책효율성이 떨어지고 책임소재가 명확치 않으며 산하기관을 양산하는 등의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는 것이 주장의 핵심으로, 지난 달 국정감사에서 본격 제기되기도 했다.

특히 컴퓨터프로그램을 특별법으로 제정한 나라가 세계 3~4개국에 불과한만큼 기존 저작권법에서 통합 흡수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의원 입법 추진되고 있는 디지털콘텐츠 육성 및 보호에 관한 법을 둘러싼 논쟁도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 문제가 핵심이다.

디지털 콘텐츠 제작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존의 콘텐츠를 디지털화한 사업자에게 10년간 복제 등을 보장한 조항이 기존 저작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학계 관계자는 기존의 법에서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권리를 포괄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나친 조항이라고 지적한다.

특별법 난립으로 인한 정책 효율성 문제 역시 지적되고 있다.

이같은 학계의 논란에 대해 디지털 콘텐츠 업계에서는 저작권자와 저작 인접권자의 갈등관계를 해결하지 못했던 기존 법체계가 걸림돌이었던 것만큼 특별법의 성격이라도 육성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밝히고 있다.

## GIS관련 지적재산권 제도화 시급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지리정보시스템(GIS) 관련 저작권 소송이 결국 무혐의로 일단락 됐다.

그러나 이를 계기로 GIS업계에는 저작권 관행과 법제도 정비에 대한 시급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넥스텔은 최근 지오스테크널러지가 지난 8월 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자지도 무단 배포에 관한 저작권법 위반 형사소송과 관련, 서울지검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접속자들이 넥스텔의 인터넷 사이트로 직접 들어오는 형태와 신세기통신의 아이터치 017 사이트의 접속자들이 사이트창을 클릭해 링크되어 있는 넥스텔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을 다르게 볼 수 없다며 넥스텔이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링크하여 서비스를 개시한 것만 가지고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소 부제기 이유를 밝혔다.

넥스텔은 작년 9월 지오스테크널러지의 전자지도 2 카피를 구입, 자사의 포탈 사이트 마이맵닷컴과 웹 GIS 솔루션 달마맵을 제작하는데 사용하고, 이중 달마맵을 데이콤에 제공하고 또 마이맵닷컴에 신세기통신의 아이터치 017사이트를 링크했다.

이에 지오스테크널러지는 허락없이 자사의 지도를 무단 사용,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넥스텔에 23억원, 데이콤과 신세기통신에 각각 4억6천만원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과 형사소송을 제기했었다. 결과적으로 이번 소송은 무혐의처분으로 끝나긴 했지만 이 사건이 GIS업계에 불거진 첫 지적재산권 소송이라는 점에서 업계의 충격을 줬다.

특히 GIS의 사용층이 일반으로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저작권문제를 너무 소홀히 해왔다는 자성의 계기를 준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사건이 재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데 있다.

이는 국립지리원, 국토연구원 등 지리정보와 관련

해 체계적인 법률이나 관행 등을 제도화시켜야 할 정부 기관들조차도 GIS분야의 지적재산권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할 것지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GIS업계는 소송자체는 불미스러운 일이지 만 묻어두기 보다는 정부나 관련 기관에서 인터넷과 무선기반 지리정보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관련법 정비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입을 모으고 있다. 국토연구원 김영표 GIS센터장은 저작권이 소프트웨어 업계 전반의 문제이긴 하지만 전자지도라는 특수성 때문에 GIS분야의 저작권은 좀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는 국가지리정보시스템 추진위원회에서 적극 나서야하고 국토연구원도 내년부터 자체적으로 연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업계 내부에서도 이 사건을 지오스테크널리지사가 사업다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도된 법정해프닝으로 의미를 평가절하한 감이 있다며 이제라도 업계도 저작권문제에 관심을 갖아야 한다는 모습이다. 한편 넥스텔은 명예훼손소송을 준비하고 있고 지오스테크널리지도 이번 검찰의 무혐의처분에 불복, 항고를 준비중이라고 밝혔으므로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를 모으고 있다.

출처 디지털타임스

## 엠피스리, 유니버설사에 저작권료 지불

세계적인 인터넷 음악파일 제공업체인 엠피스리(MP3.com)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음반업체인 유니버설뮤직그룹에 저작권료로 5340만달러를 지불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또한 현금외에 엠피스리 지분의 20%까지 시가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했다. 두 회사는 저작권 침해 피해보상에 대한 소송을 진행중에 있었으며 법

원은 엠피스리가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이번 결정으로 엠피스리는 자회사 마이엠피스리(MY.MP3.com)를 통해 유니버설 소유의 음악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엠피스리는 음악인들이 자신의 작품을 선보일 수 있는 가장 좋은 사이트로 알려져 있다.그러나 자회사를 통해 8000여 곡의 노래를 파일 형태로 제공하면서 주요 음반회사들과 마찰을 빚어 왔다.

이에따라 엠피스리는 법적인 분쟁없이 음악파일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중 이었다. 그 결과 소니 뮤직 워너브로스뮤직 등 5개의 주요 음반회사 중 4개 회사와는 협상에 성공했으나 유니버설과는 협상에 난항을 겪어 왔다.

이번의 피해보상은 엠피스리가 유니버설의 저작권을 침해했음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리고 음반회사는 저작권 위반사례마다 2만5000달러의 보상을 받게 되는 셈이다. 유니버설의 관계자는 "엠피스리의 결정에 매우 만족한다"며 "이를 계기로 저작권이 더욱 철저히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표시했다.

전문가들도 "양측 모두에 이익이 될 수 있다"며 이번 조치를 환영했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이전에 엠피스리와 협정을 맺었던 4개회사가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엠피스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약 1억7000만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산한다.

출처 매일경제

발특 2001 · 1

## 월간 「발명특허」 광고게재 안내

본회 회지인 월간 『발명특허』誌는 약 5000부가 발간되며 각 회원사 및 국내외 유관기관, 기업, 도서관, 학교, 발명가, 주부 및 학생 등에 광범위하게 제공되고 있는 발명진흥사업의 활성화를 비롯한 국내외의 산업재산권제도 및 정보자료의 대변지입니다. 다음과 같이 본지에 귀사의 홍보를 위한 광고안내를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1. 광고구분 및 게재료

\* 광고가격(1개월 기준)

광고게재면	규격	가격	비고
표지 4	칼라 전면	900,000	부가세 별도
표지 3	"	700,000	
표지 2	"	700,000	
내지(화보)	"	500,000	
내지	흑백 전면	300,000	

### 2. 연락처

한국발명진흥회 회원사업부

TEL : 05-557-1077

담당자 : 정정숙(교306)

FAX : 02-554-1532

E-mail : pid@kipa.org

### 특허청 게시판에 기술 올리면 보호

앞으로 누구나 자신의 기술내용을 특허청 'Cyber Bulletin' 에 게시만 하면 다른 사람이 특허를 받아 자신을 공격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특허청 홈페이지에 'Cyber Bulletin' 를 개설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누구라도 자신의 기술을 'Cyber Bulletin' 에 게시할 경우 그 기술내용과 게시일자를 공증해줘 기술내용을 보호해줄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제까지 기술내용이 특허를 받기에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비용을 들여가면서까지 방어 목적으로 특허출원하거나 공증기관에서 공증

을 받아 특허권자의 권리행사에 대응해 온 불편을 개선할 수 있게 됐다.

또 일반인들이 'Cyber Bulletin' 을 활용할 경우 인터넷을 통해 신속하고 저렴하게 기술공개가 가능한 동시에 방출출원 또는 공증을 위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특허청은 게시된 기술정보를 선행기술자료로 활용함으로써 특허심사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산업계수연구계의 중복 R&D 투자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

### 특허수수료 전면 인터넷 납부

특허관련 모든 수수료를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특허청은 '특허수수료 온라인납부시스템' 을 전면 개통, 특허출원민원인이 직접 은행에 가지 않고도 인터넷을 이

용해 수수료를 낼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온라인납부시스템을 이용하려는 출원인은 먼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를 통해 거래은행, 통장번호, 예금주 등 사용자 등록을 한 뒤 특허청의 확인을 받으면 된다.

특허청은 이번 온라인 납부 전면 실시로 민원인의 편의증진은 물론 수수료 직접납부시 문제점으로 지적되던 입력 사항의 잘못된 기재 등으로 인한 과오 납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또 납부된 수수료가 실시간으로 특허청 국고계좌에 입금되고 정상납부 여부를 민원인이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돼 4일가량 걸리던 서류접수 처리기간도 '당일처리' 가 가능하게 됐다.





## 대법원/상표등록무효

### 1. 기초사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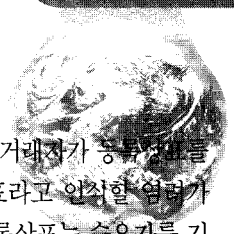
#### 이사건 출원상표 (본원상표) : POSCHEM

이사건 심결의 요지 : 상표법 제 7조제1항제11호 소정이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상표등록사정을 할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인용상표나 그 사용상품이 반드시 저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국내의 일반거래에 있어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상표나 상품이라고 하면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어야 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인용상표나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위 사용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되어질 경우에 위 규정에 의하여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하여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인용상표가 그 사용상품에 대한 관계거래자 이외에 일반공중의 대부분에까지 널리 알려지게 됨으로써 저명성을 획득하게 되면 그 상표를 주지시킨 상품 또는 그와 유사한 상품뿐만 아니라 이와 다른 종류의 상품이라고 할지라도 그 상품의 용도 및 판매거래의 상황 등에 따라 저명상표권자나 그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에 의하여 생산 또는 판매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어떤 상표가 인용상표의 사용상품과 다른 상품에 사용되더라도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를 오인, 혼동케 하여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부게 되는 것이며,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된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출처등에 관한 일반

수요자의 오인, 혼동을 방지하여 이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자 하는 위 규정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 인용상표가 저명성을 획득할 정도로 일반 수요자 사이에 널리 알려지지 못하고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만 알려져 있는 경우라도, 만일 어떤 상표가 인용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고 인용상표의 구체적인 사용실태나 양 상표가 사용되는 상품 사이의 경제적인 건련의 정도 기타 일반적인 거래의 실정등에 비추어 그 상표가 인용상표의 사용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된 경우에 못지 않을 정도로 인용상표권자에 의하여 사용되는 것이라고 오인 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경우라면 비록 그것이 인용상표의 사용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된 경우가 아니라 할 지라도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2. 이사건 심결의 적법여부

이사건 등록상표 POSCHEM은 1994년 이래로 상표등록을 받아 사용되어왔고, 당시 인용 표장 POSCO는 1993년 말부터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어서, 사용기간이 1년남짓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보면, 등록상표의 등록사정 당시에 인용표장이 일반공중의 대부분에까지 널리 알려지게 됨으로써 저명성을 획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등록상표와 인용표장의 지정상품이 동일, 유사하다고 할 수 없고, 일반적인 거래의 실정 등에 비추어 등록상표가 인용표장의 사용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되는 경우에 못지 않을 정도로 인용표장권자에 의하여 사용되는 것이라고 오인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



다고 보여지지 않는다

### 3. 판단

결국 등록상표의 등록사정 당시 위 주식회사 포스

코켄으로 인하여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혼동상표를 피고의 자회사가 사용하는 상표라고 인식할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등록상표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고 할 수 없어 상표법 제 7조 제1항 제 1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다.



## 대법원/상표등록 무효심판-기각

### 1. 기초사실

이사건 출원상표(본원상표) : MR.PIZZA

인용서비스표(인용상표) : Mister PIZZA

서비스표의 구성 중 식별력 없는 요소들이 결합된 부분이 있다면 그 결합으로 특별히 새로운 관념이나 식별력을 형성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그 부분은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표장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 2. 이사건 심결의 적법여부

등록서비스표나 인용서비스표의 문자 부분 중 'Mr.'나 'Mister' 부분은 누구나 사용하는 호칭 내지 일반인의 호칭에 덧붙여 사용하는 단어에 불과하여 식별력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 만 아니라, 이들이 'PIZZA'와 결합된 'MR.PIZZA'나 'Mister PIZZA'도 그 결합으로 새로운 관념을 형성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굳이 그 관념을 상정해 보더라도 '피자를 파는 사람' '피자를 만드는 사람' '피자를 배달하는 사람' 등으로 관념될 뿐이어서 각 그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새로운 식별력이 없다고 봄이 상당

하고, 이러한 식별력 없는 부분은 양 서비스표의 유사 판단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인바,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등록서비스표와 인용서비스표를 식별력 없는 위 문자 부분을 제외한 도형 부분만을 대비하여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양 서비스표를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서비스표의 특별현저성이나 서비스표의 유사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체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으로 심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 3. 판단

위 사안은 상표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선출원서비스표와 동일, 유사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이지만 어차피 양 서비스표의 동일, 유사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상표법 제8조 1항에 의해 등록서비스표의 등록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등록서비스표가 인용서비스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상표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등록서비스표의 등록이 무효라고 한 제1심 심결을 파기하고, 심판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 것은 정당하다.

등록상표 무효 심판 -> 기각 ( 대법원 )